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문

* 국문번역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밝힙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문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총회는 기존의 인권 관련 국제 규약,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조하고,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그리고 제3차 문화장관원탁회의에서 채택된 '2002년 이스탄불 선언' 에서 강조 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장 수단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그리고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 및 자연유산 간의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하고,

세계화 및 사회변화의 과정이 공동체간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히 불관용 현상이 그러하듯이, 무형문화 유산의 보호를 위한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유산의 쇠퇴·소멸 및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와 공통의 관심사를 인식하고,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으로 유네스코의 활동이 광범한 영향을 미침에 주목하고,

나아가, 현재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규약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정·권고 및 결의를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새로운 규

정으로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보충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형문화유산 및 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국제사회가 이 협약의 당사국과 함께 협력 및 상호 원조의 정신으로 이러한 유산의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 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을 상기하며,

사람들을 더욱 친밀하게 하고 서로 간 교류와 이해를 보장하는 요소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서, 2003년 10월 17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제 1장 총강

제 1조 협약의 목적

동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나. 관련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존중

다. 지방, 국가, 국제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인식과 상호 이해 증진

라. 국제적 협력과 지원 도모

제 2조 정의

협약의 목적상,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을 의미한다. 대대로 전승되어온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의 환경, 자연과의 상호작용, 역사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들에게 정체감과 연속감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공동체, 집단, 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존하는 국제 인권 규약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될 것이다.
2. 위 1항에서 정의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 범주의 대상을 포함한다.
 -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나. 공연 예술
 - 다. 사회 관습, 의례, 축제 행사
 -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마. 전통 기술
3. '보호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진흥, 증진, 특히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을 통한 전승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은 물론 그 여러 측면들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의미한다.

4. '당사국'이란 이 협약에 구속되고 협약이 발효된 국가를 의미한다.

5. 동 협약은 제 33조에 언급된 바의 영토 개념을 준용하여 당사국의 범주를 규정한다. 그에 따라 당사국이라는 표현은 그 영토를 의미한다.

제 3조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

동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 가. 무형문화유산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상 세계유산의 지위를 변경하거나 보호수준을 저하시키는 것
- 나.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

제 2장 협약상의 기관

제 4조 당사국 총회

- 1. 협약 당사국의 총회(이하 '총회')는 이 협약의 최고기관이다.
- 2.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의 결정,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의 요청 또는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는 자체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제 5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유네스코 내에 둔다. 위원회는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이 선출하는 18개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 2.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개국에 달하면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개국으로 증가한다

제 6조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 및 임기

1.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역별 대표성 및 순환의 원칙을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국은 총회에 참석한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된다.
3.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국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최초 선거에서 추첨으로 선택된다.
4. 총회는 2년마다 위원회의 위원국 절반을 교체한다.
5. 총회는 또한 공석을 채우는데 필요한 수만큼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위원국은 두 번의 임기를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7. 위원회의 위원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적격자를 자국 대표로 선정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임무

이 협약이 부여한 다른 권한에 대한 영향 없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가. 협약 목적의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 및 감독

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에 대한 지침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조치의 권고
다. 제 2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의 사용에 관한 계획안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에 제출

라. 제 2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필요조치의 채택

마.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 제출

바.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및 총회 제출을 위한 요약

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다음에 관한 요청의 검토 및 이에 대한 결정

(1) 제 16조·제 17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언급된 목록상 등재 및 제안

(2) 제 2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지원 공여

제 8조 위원회의 운영 방식

1. 위원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을 총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체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3.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특별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공공·민간 단체 및 개인을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제 9조 자문기구의 인가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비정부기구가 자문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구의 인가를 총회에 제안한다.
2. 위원회는 또한 상기 인가 기준 및 방식을 총회에 제안한다.

제 10조 사무국

1. 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사무국은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 의제초안 및 문서를 준비하고 총회와 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3장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제 11조 당사국의 역할

모든 당사국은,

- 가. 자국 영토 내에 속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 나. 제 2조 3항에 언급된 보호 조치들 중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 하에 자국의 영토 내에 속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지정, 정의한다.

제 12조 목록

1. 보호를 위한 지정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1개 이상의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2. 각 당사국은 제 29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조 그 밖의 보호 조치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책임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한다.
- 다. 특히,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촉진한다.
-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1)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훈련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 및 이러한 유산의 실연 또는 표현을 위한 장소 및 공간을 통한 유산의 전수 장려
 - (2)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양상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 (3)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제 14조 교육·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 (1)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배양 활동
 - (4) 비공식적 지식전수 수단
-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동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제 15조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참여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 4장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제 16조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성과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된 당사국의 제안에 따라 인류 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한다.
2. 위원회는 동 대표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제 17조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1. 위원회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록에 등재한다.
2. 위원회는 이 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의 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3. 극도의 긴급 상황 (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가 승인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에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위 1항에 언급된 목록에 등재 할 수 있다.

제 18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1.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을 기초로 하고 위원회가 작성하고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소지역·지역 유산 보호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2.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제적 지원 요청을 접수·검토 및 승인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우수 관행을 보급함으로써 위 프로젝트·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을 보조한다.

제 5장 국제협력 및 지원

제 19조 협력

1. 동 협약의 목적상 국제협력은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류, 공동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 체제의 확립을 포함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관습법 및 관행을 해함이 없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20조 국제지원의 목적

국제지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여될 수 있다.

- 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
- 나.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 준비
- 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국가·소지역 및 지역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활동의 지원
- 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목적

제 21조 국제지원의 형식

위원회가 당사국에 공여하는 지원은 제 7조에 언급된 운영 지침 및 제24조에 언급된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가. 보호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
- 나. 전문가 및 실연자의 공급
- 다. 모든 필수 직원에 대한 훈련
- 라. 기준 설정 및 다른 조치의 마련
- 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바. 설비 및 노하우 제공
- 사. 적절한 경우 저리 융자 및 공여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재정 및 기술 지원

제 22조 국제지원의 조건

1. 위원회는 국제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예상조치·필요한 개입 및 비용산정 등 요청에 포함될 정보를 명시한다.
2. 긴급 상황시 위원회는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및 협의를 실시한다.

제 23조 국제지원 요청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지원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동 신청서는 또한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동 신청서는 필요서류와 함께 제 22조1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한다.

제 24조 수혜당사국의 역할

1.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공여된 국제지원은 수혜당사국과 위원회 간 협정으로 규율된다.
2. 원칙적으로 수혜당사국은 국제지원이 이뤄지는 보호 조치의 비용을 자국의 재원 한도 내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공여된 지원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6장 무형문화유산기금

제 25조 기금의 성격 및 재원

1. 무형문화유산보호 기금(이하 '기금')을 설립한다.
2. 동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3. 동 기금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가. 당사국의 분담금
나. 유네스코 총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계상한 자금
다.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부·증여 및 유증
 - (1) 다른 국가

(2)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연합 소속의 기구·프로그램 및 다른 국제기구

(3) 공공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라. 기금의 재원에 대한 이자

마. 모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 및 기금 관련 행사의 수입

바. 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재원

4. 위원회의 재원의 사용은 총회가 결정한 지침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5.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을 전제로 특정 사업 관련 일반적·구체적 목적의 기부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수령할 수 있다.

6. 동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정치적·경제적 조건과 다른 조건을 기금에 대한 기부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6조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분담금

1. 동 협약의 당사국은 자발적인 추가분담금에 대한 영향없이 최소한 2년마다 분담금을 기금에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분담금 액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동일한 백분율의 형식으로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이 조 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하지 아니한 국가로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당사국의 분담금은 유네스코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2. 다만, 이 협약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언급된 국가는 비준·수락·승인·가입서 기탁시 자국이 이 조 1항의 규정에 기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3. 동 조 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이 선언을 철회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 총회 개최일까지 이 국가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동 조 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당사국의 분담금은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납부되며, 이 조 1항의 규정에 구속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최대한 근접하여야 한다.

5. 당해년도와 그 전년도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을 체납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위원국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최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납 국가가 이미 위원회의 위원국인 경우 그 국가의 임기는 이 협약 제 6조에 규정된 선거시 종료된다.

제 27조 기금의 자발적 추가 분담금

제 26조에 언급된 것에 추가하여 자발적 분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위원회가 이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 28조 국제기금 조성 운동

당사국은 기금을 위하여 유네스코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제적 모금 운동을 가능한 한 지원한다.

제 7장 보고서

제 29조 당사국 보고서

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주기를 준수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진 입법·규제 및 다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30조 위원회 보고서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제 29조에 언급된 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총회의 각 회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유네스코 총회에 통지된다.

제 8장 경과규정

제 31조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선언과의 관계

1.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이전에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언된 유산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한다.
2. 상기 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의 통합으로 제 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향후 등재기준이 예단되지 아니한다.
3. 동 협약이 발효한 후에 상기 선언은 더이상 시행되지 아니한다.

제 9장 종결규정

제 32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1. 동 협약은 각 유네스코 회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2.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33조 가입

1. 동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의 가입 초청을 받은 유네스코 비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동 협약은 또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1514(XV)에 따른 완전한 독립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국제연합이 인정한 완전한 자치 정부를 지니면서, 동 협약이 규율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약체결권 등 권한을 가진 자치구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34조 발 효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월 후 그날 또는 그 이전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은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35조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

다음의 조항은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당사국에 적용된다.

- 가. 연방 또는 중앙입법권의 법적 관할에 속하는 동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 또는 중앙정부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나. 연방의 헌법체제 하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각각의 행정구역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그러한 행정구역에 채택 권고와 함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 36조 협약의 탈퇴

1. 당사국은 동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문서로서 통고된다.
3. 탈퇴는 탈퇴통고서 수령 후 1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까지는 탈퇴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7조 기탁처의 기능

동 협약의 기탁처로서 유네스코사무총장은 유네스코 회원국, 제 33조에 언급된 유네스코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 제 32조 및 제 33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제 36조에 규정된 탈퇴통고서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 38조 개정

1. 당사국은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회람하고 회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 절반 이상이 이러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총회 회기에 토의 및 채택을 위하여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협약 채택 이후, 당사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관련 협약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4.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가 동 조 3항에 언급된 문서를 기탁한 후 3개월 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서만 발효한다. 그 이후 개정안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이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상기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5. 동 조 3항 및 4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원회의 위원국 수에 관한 제 5조의 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개정은 채택 시 효력을 발생한다.
6. 동 조 4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한 후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다음으로 본다.
 - 가. 개정된 협약의 당사자
 - 나. 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자

제 39조 정본

동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작성되며, 모두 동등하게 정본으로 인정된다.

제 40조 등록

동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네스코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